

서대문형무소역사관 촬영 허가조건

- 시설사용자는 촬영 등을 위해 특별한 설비, 장비 또는 구조물 등을 반입하는 경우 역사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- 서대문형무소 건축구조물에 직접적인 고정(못·볼트) 등 사용은 불가합니다.
- 촬영에 사용한 설비, 장비 또는 구조물은 촬영종료 후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, 설치 및 철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시설사용자가 부담합니다. 또한 시설사용자는 설비, 장비 또는 구조물 등의 반입 및 철수로 인해 역사관의 기존 시설물 및 설비 등에 손상을 가져온 경우는 변상하여야 합니다.
- 역사관은 시설사용자가 반입한 설비, 장비 및 구조물 등의 철수를 지연할 경우 임의로 철거할 수 있으며,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사용자가 부담합니다. 또한 이때 발생한 설비, 장비 및 구조물 등의 손상에 대하여 역사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시설사용자는 촬영 기간 중 역사관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, 특히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관리의무 소홀로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합니다.
- 시설사용자는 역사관 시설사용에 있어,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.
- 역사관은 촬영기간 중 촬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어떠한 인적,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촬영을 제한하거나 촬영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 - ① 시설사용 허가 내용, 조건, 신청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
 - ② 촬영 내용이 선정성이나 노출이 있을 경우
 - ③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운영 목적을 저해하는 경우